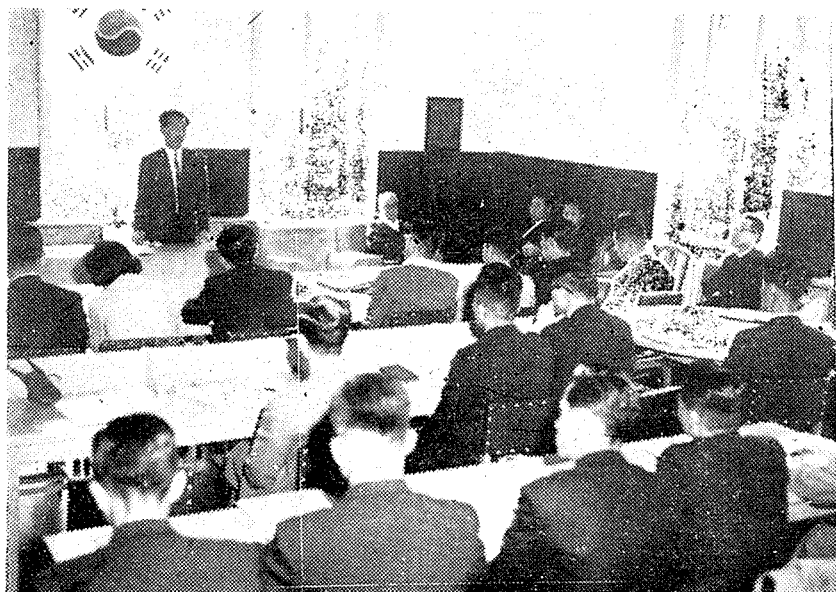


第一回 全國公共圖書館長 會議錄(拔萃)



主催：韓國圖書館協會

日時：1964年 4月 14日 오전 10時

場所：國立中央圖書館 人文科學室

1. 開會式

1. 開會宣言(司會：成宅慶 圖協幹事)

2. 國民儀禮

3. 會議經過報告(司會 成宅慶)：圖書館인들의 모임에서 屢次 論議되어 온 「圖書館週間」의 設定이 圖協의 今年 豫算에는 決定되지 않았으나 昨年에 制定된 圖書館法의 施行과 더불어 今年는 더욱 社會的으로 圖書館에 對한 認識과 國民들의 啓蒙이 要請되는바 圖協에서는 若干의 財政을 亞細亞財團으로부터 後援을 얻어 여러 가지 行事を 計劃하였습니다.

그중 이 公共圖書館長會議 開催 計劃은 지난 4月1日 仁川市立圖書館의 張仁植館長과 協會事務局 사이에 論議되어 即時 國立中央圖書館의 崔洛久館長과 市立南大門圖書館의 崔昌均館長과 協議되어 4月4日에 張仁植館長과 事務局과 오늘 이회의에서 討議案件을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處해 있는 現實에 비추어 選定하고 議題의 提起者를 配定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1962年 7月 21日~22日 兩日間 서울에서 開催된 第一回 全國 圖書館大會의 公共圖書館部會와

1963年 9月 16日~17日 兩日間 仁川에서 開催된 第二回 全國 圖書館大會의 公共圖書館大會가 있었으나 公共圖書館長 會議는

이런이 우리나라에서는 史上 처음이 되겠습니다.

4. 開會辭

閔泳珪(圖協會長): “館書館 一線에서 手苦하시는 여러 館長님께 아직도 우리의 環境은 館書館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고 沒理解한 가운데서 勞苦를 아끼시지 않고 奮闘하시는데 對하여 敬意를 表해 마지 않는다”는 要旨의 開會辭가 있음.

5. 來賓祝辭

韓英洙(內務部企劃管理室 行政書記官): “祝辭를 드리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圖書館界의 發展을 祝福하며 오늘의 이會議가 도서관계의 發展을 위해 意義있는 會議가 되기를 빈다”는 要旨의 祝辭가 있음.

6. 李範昇氏에게 感謝狀 贈呈

司會 成宅慶: 李範昇先生의 略歷紹介(12page의 「至思 李範昇先生과 京城圖書館」을 參考하시기 바람)

閔泳珪會長: 感謝狀을 贈呈

感謝狀內容: 李範昇先生은 진작이 1919年 先生의 私財와 精誠을 기우려 오늘의 서울市立 鍾路圖書館의 前身인 京城圖書館을 設立 經營하신바 무릇 國民의 啓蒙과 國力向上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意義를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시고 이에 獻身 奉仕하시던 先生의 謙虛하고도 높으신 뜻을 못내 追仰하옵고 第一回 圖書館週間을 마지하여 全國 圖書館人을 代表하여 여기에 적은 포적과 아울러 感謝狀을 드리는 바입니다.

1964年 4月 14日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長

閔 泳 珪

李範昇: 四十五年前 京城圖書館을 設

立 運營하던 當時를 回顧하면서 그때의 苦衷談과 또 “별로 한일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感謝狀을 주시니 感慨無量한 바 있다”는 要旨의 答辭가 있음.

7. 議長 選出

崔洛久(臨時議長): 議長 選出方法을 물은바

李鴻球(市立鍾路圖書館長): 圖協의 公共圖書館部會 代表理事이신 崔洛久 專務理事를 議長으로 推載할 것을 動議한 바 滿場一致로 可決

崔洛久議長: 內務部 企劃官室의 韓英洙 書記官 文教部 徐光錫 社會教育課長 및 擔當 朴德柱 事務官을 紹介하고

“公共圖書館이 그 나라 圖書館運動에 主導的인 役割을 한다는 點에서 本會의 責任이 重要하며 本會議의 意義가 크다”는 要旨의 人事가 있었음.

二. 案件 討議

1. 韓國 公共圖書館의 現況

議長: 本件에 對해서 張仁植館長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 1963年末 現在로 全國에 公共圖書館이 43個館입니다. 그中 道立 1, 市立 19, 郡立 20, 私立 3, 입니다.

43個館의 職員數는 253名

閱覽座席數는 5,907席

藏書數는 644,913冊

年間閱覽者數는 140,918名

年間貸出冊數는 737,018冊이다

年間 圖書館 增加數를 살펴 보면

1955年 9月1日 現在 全國에 12個館

1956年 9月1日 “ “ 16 “

1957年 9月1日 “ “ 17 “

1960年末	現在	全國에	18個館
1961年末	"	"	21 "
1962年末	"	"	26 "
1963年末	"	"	43 "이다

地域의인 分布를 보면 서울에 2個館(國立除外), 釜山에 2個館, 京畿道內에 20個館, 江原道에 2個館, 忠北에 2個館, 忠南에 3個館, 慶北에 3個館, 慶南에 3個館, 全北에 3個館, 全南에 2個館, 濟州에 1個館이다.

公共圖書館의 職員들이 圖書館 專門教育 狀況은 八週日間 以上の 教育을 받은者가 7,8名에 不過하고 거기가 協會의 實務者 講習會(平均 10日間)의 修了者들이 고작이다.

2. 現代 公共圖書館의 機能

議長: 本件에 對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學均(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圖書館法 第15條에 例舉된 5個 項目을 보면 그 機能이 表示되어 있는데 크게 보아 郷土: 資料 蒐集問題와 奉仕問題로 나눌수 있겠습니다(5個項目에 關한 詳細한 說明이 있음)

張仁植: 오늘날의 圖書館은 單純한 冊의 貯藏所가 아니라 各種 資料의 科學的인 組織과 보다 早速하게 讀者가 願하는 資料를 提供하고 多角的인 奉仕를 해야만 할 그 技能과 使命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 的 現實은 前近代的인 制度와 施設에서 發展됨이 없이 沈滯해 있습니다. 故로 그러한 現代的 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施設을 갖추고 市民에 奉仕하는 모델 圖書館이 爲先 道單位로 하나씩이라도 設置되면 그 地域社會에서 圖書館 運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郡立圖書館의 設置, 普及, 運營 및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

議長: 本件에 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表聖子(坡州郡立圖書館): 理解가 不足하고 貧弱한 郡財政下에 郡立圖書館의 設置. 運營은 그 隘路가 莫甚합니다. 특히 豫算의 隘路와 또 所屬이 郡內務課 行政係에 所屬된 곳과 教育廳에 所屬되어 있는 곳等 一元化된 體系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運營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議長: 所屬廳 問題는 圖書館法이나 教育自治法에 依하여 宜當 教育廳으로 移管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만 教育自治法이 復活된지가 아직 日淺하여 그랬어야만 할 事務를 미처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張仁植: 市立圖書館을 例를 들어 보면 圖書館 運營을 教育廳에 移管하더라도 圖書館豫算을 市 一般會計에 計上하여 教育費 特別會計로 轉渡해 주어서 圖書館을 運營케 됨으로 教育自治法이 復活되었다손 치더라도 빨리 移管되지 않는 곳이 있으리라 봅니다. 故로 長官 通牒으로 移管을 督促해야만 할 줄 압니다.

4. 公共圖書館의 廳舍確保 問題

議長: 本件에 對하여서 大邱市立圖書館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二根(大邱市立圖書館): 大邱市立圖書館의 境遇를 말씀 드리면 5·16以後 教育自治法이 廢止되었을 때 教育廳 廳舍를 市立圖書館 廳舍로 引受받아 一餘年 使用하다가 지난해 教育自治法이 復活됨에 따라 現在는 舊廳舍로도 못갈 形便이고 教育廳 二層 한구석을 占하고 그 機能도 發揮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現在 大邱市の 경우를 보면 財務部, 內務部, 文敎部만 協議된다면 例를 들어 公會堂 建物같은 것을 市立圖書館으로 臨時利用할 수 있는 方途가 있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國庫補助 및 地方自治費에서 年次計劃下에 圖書館 廳舍를 設立할 關係部處의 圖書館에 對한 理解가 要請됩니다.

中 食 (12時 40分)

議長: 續開宣言(午後 2時)

李鍾文(圖協 事務局長): 本會議의 召集目的과 意義를 指摘하고 一線에서의 勞苦에 對한 慰勞의 人事가 있음.

5. 公共圖書館의 機構設置

議長: 本件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張仁植: 本件은 앞서 公共圖書館의 機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使命이 莫重함에 비추어 擔當部署를 設置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는 職制上으로 아무것도 明文化된 것이 없으니 이런 機會를 適하여 公式的으로 公共圖書館의 職制에 對한 檢討가 있어야 할줄 압니다. (이에 對하여 많은 論議가 있음).

7. 職種 및 定員

張仁植: 職種이 現在 所屬廳에 따라 다릅니다. 國家公務員(敎育廳管下)은 司書職으로 있으며 餘他 圖書館(市·郡管下)은 地方公務員法の 職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司書職種으로 一元化하기 爲해서도 早速히 所屬廳을 一元化하여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定員에 있어 仁川市立圖書館을 例로 든다면 15名 職員中 正規職員이 6名 이고 其外는 臨時職으로 充當되고 있습니다. 法的 惠澤을 받지 못하는 不安定한 臨時 職員에게 責任感있는 일을 期待 할 수

없으며 圖書館運營에도 安定性이 없다. 故로 圖書館職員의 定員을 그 地域(奉仕 對象者)의 人口數와 圖書館規模에 準하여 圖書館을 運營할 수 있도록 增員 配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成宅慶 幹事: 定員에 對해서 現在 作成中에 있는 圖書館法 施行令에서 圖書館規模에 依하여 人口(奉仕對象者)를 參酌한 定員 配定이 規定된 것으로 압니다.

金鍾文(釜山市立圖書館長): 圖書館法 施行令이 公布되면 專門職의 任用이 있을 줄 아는데 圖書館職員을 모두 專門職 即 司書職으로 하느냐? 아니면 庶務擔當은 一般職 公務으로 한다면 그 比率은?

議長: 그 問題는 各已 事情에 따라 定하여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定員만 配定되면 別問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張仁植: 館長만은 專門職으로 補任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現在 專門職이 아니면 一定期間을 두어서 그동안 敎育을 받도록 하는것이 어떠한런지?

議長: 館長을 專門職으로 하는데 對하여 異議가 없으십니까?

(館長을 專門職으로 하는 것에 對하여 票決한바 過半數以上이 贊同)

8. 公共圖書館의 豫算(財政)問題

議長: 本件에 對해서는 누구나 할말씀이 많으실줄 압니다. 누구나 말씀해 주십시오.

朴二根(大邱市立圖書館): 圖書館法도 이 豫算에 對하여 애매하다. 福祉社會 建設을 云云하고 있는데 圖書館豫算이 언제나 疎忽히 取扱되어 왔다. 國民生活 向上과 文化發展은 圖書館資料의 充分한 利用으로 實顯되리라 생각합니다. 故로 地方

稅에 있어서 消防稅와 같이 目的稅로서 圖書館稅가 있어야만 할줄 압니다.

金鍾文: 이 財政問題에 있어서 文敎部와 財務部間에 傳出金問題를 妥協하는 機會가 必要하다고 느낍니다.

李鍾根(大邱市立圖書館): 公共圖書館의 運營이 教育廳에 移管된다하여도 市立圖書館의 豫算이 市의 一般會計에 計上되어 이것이 教育費 特別會計로 轉入되어 教育廳에서 執行하는 式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豫算을 세울 때에는 圖書館에서 直接 나서서 市와 豫算 鬭爭을 하고 教育廳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獲得한 圖書館豫算의 執行에는 不便이 많으며 教育廳에서 豫算의 執行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다. 또 市에서 教育費 特別會計로 圖書館豫算을 全額轉入하지 않는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束手無策이다. 決果的으로 現在狀態로서는 教育廳에 移管됨이 오히려 豫算面에서는 不利하게 된다. 故로 앞서 말씀된바와 같이 目的稅로서 圖書館稅가 있어야만 財政이 確保될 것입니다.

孫根宇(清州市立圖書館): 豫算問題의 根本的인 解決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現在의 求乞式 方法에 依해서는 舊態를 벗어날 줄 없습니다.

9. 公共圖書館 職員의 時間外 勤務手當支給問題

議長: 圖書館은 現業管廳으로 그 性質上 當然히 時間外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야 할 줄 아는데 學皆의 圖書館이 시간의 근무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統計上에 나타난 근무時間을 보면 最低 7時間에서 最高 17時間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對해서는 從前

에도 當局에 建議한바도 있습니다. 이 시간의 근무수당을 支給하고 있는 곳에서 參考로 어떻게 支給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學均: 現在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公무원보수규정중 수당, 26條, 27條, 28條에 依據 支拂되고 있는데 3時間에 80원 토요일은 4時間에 100원, 日요일은 8시간에 120원을 支給하고 있습니다.

李鍾根(大邱市立圖書館): 大邱市立圖書館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支給하는 바와같이 支給하고 있는데 이것은 法으로서 宜當 支給하기로 되어 있으니 現在 支給하고 있는 例에 좇아 못받는 곳에서는 관계 部署에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鍾文: 釜山市立에서는 每日 40원 가량을 支給하고 있습니다.

10. 主務管廳에 圖書館行政을 爲한 職制確立 問題

議長: 本案件에 對해서는 過去 數次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文敎部內에 圖書館行政을 擔當할 課程度라도 設置되어야 하겠다.

李鍾根: 市立圖書館이 教育委員會의 係에 所屬되고 있는 實情이니 이의 是正이 時急하며 圖書館行政 擔當部署에는 圖書館專門職을 配置하여야 될줄 압니다.

11. 關係部處間의 協助

張仁植: 地方마다 文化院이 있는데 公報部와 文敎部가 協議하여 文化院에 배부되는 寫眞資料 및 映畫필름 같은 것을 公共圖書館에서는 惠澤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 道立圖書館의 設置

議長: 우리나라에 現在 道立圖書館이 濟州道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道立圖書

館의 設置에 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張仁植: 國立中央圖書館 아래에 道마다 道立圖書館이 있어서 地域의 中央圖書館으로서 市·郡圖書館을 指導하는 組織網이 緊히 必要합니다. 道立圖書館은 規模는 現實的인 우리의 形便으로서 小規模로서 政府刊行物の 配付, 道行政에 必要한 參考資料等を 提供할 수 있을 程度면 足하리라 봅니다.

議長: 長時間討論을 계속하였으니 約十分間 休息토록 하겠습니다. (4時10分부터 10分間 휴식)

孫根宇(濟州市立圖書館): 大體로 討論案件 全般에 걸쳐 論議되었다고 생각되오니 이제 建議事項을 採擇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 이제 建議事項을 採擇하자는 動議案이 나왔는데 모두의 意見은?

(全員 이에 贊同하다)

議長: 이 자리에서 건의할 事項을 定하고 文案作成은 三, 四人을 選出⁵ 委囑하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全員 贊同하다)

議長: 人選은 제가 仁川市立圖書館 張仁植氏와 市立鍾路圖書館長 李鴻球氏 國立中央圖書館의 申學均氏 그리고 協에서 한사람 이렇게 四人을 추천합니다

(이에 全員 同意하여 張仁植, 李鴻球 申學均, 協會에서 一人이 건의안 作成 員으로 選定되고 採擇된 建議事項은 面的 決議文 및 건의사항 參照를 바람)

議長: 長時間 不便한 座席에서 진지 討論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금부터 도서관 봉사에 관한 영화상영 下층 영사실에서 있사오니 관람하시고 寧히 돌아가십시오.

(5時40分 閉會)

韓國의 公共圖書館 現況

一. 國別 公共圖書館 比較

韓國~人口 960,000名에 公共圖書館 1個館

國民 200名에 冊 3卷

日本~人口 125,000名에 公共圖書館

比 較 表

1個館

國民 5名에 冊 1卷

스웨덴~人口 2,300名에 公共圖書館

個館

國民 2名에 冊 3卷

國 別	館 數	人 口	藏 書 數	圖書館比率	藏書比率	備 考
韓 國	26	25,000,000	263,000	960,000 : 1	0.015冊	1963年度 統計 (韓國圖書館協會)
日 本	739	93,000,000	19,115,981	125,000 : 1	0.2冊	1962年度 統計 (日本圖書館協會)
덴 마 크	1,365	4,547,000	9,900,000	3,300 : 1	1.5冊	1958年度 統計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스 웨 덴	2,909	7,454,000	13,572,000	2,300 : 1	1.5冊	"
美 國	7,871	180,529,000	200,000,000	22,500 : 1	1冊	"
소 련	137,609	214,400,000	752,604,400	1,500 : 1	4冊	"

公共圖書館의 豫算

公共圖書館의 豫算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各種 圖書館(學校, 大學, 特殊)이 다 하지만 더욱 公共圖書館의 豫算은 말도 없이 貧弱하다.

1963年度 國內의 26個 全國圖書館의 豫算을 全部 合하여 1,700萬원이다.

公共圖書館 職員 時間外 勤務手當 問題
國內의 公共圖書館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問題를 檢討해 보면

開館時間이 最低 7時間부터 最高 17時間까지 閉館을 하고 있다.

圖書館職員이 겨우 1人 乃至 5人未滿이 6個館中 15個館이 된다.

每日 勤務 或은 2日中 1日을 勤務해야 할 곳이 15個館되는 족이다.

6個館의 平均 閉館時間이 12時間이 된다.

그러나 時間外 勤務手當의 支拂없이 酷吏되고 있다.

郡立圖書館 設置問題

우리나라 圖書館法 第7條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上을 爲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라는 溫的인 無力한 條文이 있다. 그러나 地長官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如何에 따라 立 圖書館이 設立이 左右된다. 京畿道에는 웅진郡을 除外하고 다 設置되어

있다.

또 郡內의 個人有志에 依하여 郡立圖書館이 設置된 곳도 있다.

全國에 郡立圖書館이 4個있었는데 1963년에 京畿道內에 16個館이 더 設置되어 20個館이다.

五. 公共圖書館의 廳舍 問題

教育自治法 廢止에 따라 市立 域은 郡立圖書館이 教育委員會 廳舍를 引受하여 圖書館으로 使用하던 것이 1963年 10월에 教育自治法의 復活에 따라 圖書館이 올대 갈데없이 된곳이 많다. 그 代表的인 例로서 大邱市立圖書館의 境遇이다.

如斯한 公共圖書館들은 그 地方官廳의 所有建物이나 또는 公有地를 利用하여 建物을 세워서 어떤 對策을 마련해야만 하겠고 關係部處(內務部, 文教部, 地方官署)間에 協議만되면 大既의 境遇 아쉬운대로의 建物은 于先確保 될수 있을줄 믿는다.

六.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

從來 市立圖書館이 어느 地域에서는 市直屬管理로 運營되는 곳과 市一般會計의 豫算中에서 圖書豫算을 教育委員會에 轉入하여 市教育委員會로 하여금 管理 運營케 하는곳等 두가지 方法이 只今 現在까지도 併行되고 있다.

이는 圖書館法에 依하여 모두 教育委員會 傘下로 一元化되어야 할줄안다.